

- 2021년도 -
광명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광명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광 명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직무내용	임용예정기관
청원경찰	7명	·청사보안, 방호를 위한 청사출입 통제 및 순찰 ·집단시위로 인한 청사 점거사태 예방 및 시위자 통제 ·집단민원 대처, 청사 내·외 질서유지, 시설물 훼손행위 및 불법행위 계도, 민원안내 ·그 밖에 업무 분장사항 등	광 명 시

2 응시자격 (가 ~ 마 항목의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임용자격(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 만 18세 이상인 사람.(2003.12.31.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사람

라. 거주지 제한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명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 제외)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3

시험방법

가. 1차 필기시험(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 한함)

- 시험과목 : 2과목(일반상식, 민간경비론)
 - 문항수 : 과목별 20문항(4지 택1형)
 - 시험시간 : 40분
 - ※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
- 합격자 결정방법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3배(21명) 선발**
 - ※ 1개 과목이 40점(100점 만점 기준)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 동점자로 인해 21명 초과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나. 2차 체력검정(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시험종목 : 3종목 / 종목별 10점, 총 30점 만점
- 배점현황

구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불합격
남자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여자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 합격자 결정방법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인원의 1.5배(11명) 선발**
 - ※ 각 종목에서 2점 미만, 총점 30점 중 12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다. 3차 면접시험(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함)

- 평가항목 : 5개 항목
 -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준용
 - '우수'등급 : 합격
 - '보통'등급 : 우수등급 응시자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 ※ 보통등급 순위 결정방법 : 고득점자 순 [필기점수(50%)+체력검정점수(50%)]
- ※ 동점자 순위 결정방법
 - 필기시험 고득점자 → 체력검정 고득점자 → 면접시험 '상'의 개수가 많은 자순으로 결정
-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 1인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 추가면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가산점 적용(필기시험, 체력검정)

가. 가산점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산점 대상 분야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 가산점은 필기시험의 2과목 모두 4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체력검정의 각 종목에서 4점 이상, 총점 30점 중 12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적용함.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대상 자격명칭과 증명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필기시험 전일 18시까지 광명시 인사팀으로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함

나.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이며,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점수로 환산 할 수 있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및 체력검정의 각 종목별로 가점을 부여함.

5

응시원서 등 접수

가.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제출<원서접수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순서대로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 ② 이력서 1부
- ③ 자기소개서 1부
- ④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⑦ 응시수수료 : 5,000원(응시서류와 함께 총무과 인사팀에 납부)

나.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1. 5. 11.(화) ~ 5. 13.(목) (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외
- 장 소 : 광명시청 총무과(인사팀) / 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

· 주 소 : (14234) 광명시 시청로 20(철산동, 광명시청)
광명시청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전화요망

→ 우편봉투 겉면에 "광명시 청원경찰 응시원서" 표기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체력검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고
2021.5.21.(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추후 공고			

※ 체력검정,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광명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

6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급

나. 수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급

다. 복무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근무방법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

7 기 타

■ 응시자는 자격요건(특히 신체조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가.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나.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명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등록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체력검정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정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 체력검정 시 복장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단, 위화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복장 불가)하고, 장갑이나 손미끄럼 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도 착용 불가합니다.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총무과 인사팀 (☎ 02-2680-2105)